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변경대비표

1. 주요 개정 내용

약관변경절차 조항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내용 반영

2. 시행일 : 2016년 6월 7일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적용

4. 변경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 1 조 (약관의 적용)~ 10 조(판매수수료 등) (생략)	제 1 조 (약관의 적용) ~10 조(판매수수료 등) (생략)(현행과 동일)	
제 11 조(예치금의 이용료)① <생략> ② 회사는 예치금 지급기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예치금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제 11 조(예치금 이용료) ① <생략><현행과 동일>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금융상품물>> 펀드>> 펀드자료실>> 공지사항>> 외국집합투자증권(역외펀드) 매입신청 자금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2016.6.7)), 온라인 거래를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시 안내방법 개선 (공정위 시정요청)

<p>변경예정일 전에 이항 앞의 문장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제 12 조 제 3 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시에 함께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 1 항에 불구하고, 고객의 예치금을 회사가 관리하는 저축 또는 투자용 계정에 예치하여 해당 계정에서 이자 또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이용료 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p> <p>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치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치금 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p> <p>④ 고객은 제 3 항에 따라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 2 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치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치금 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p> <p>⑤ 회사는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 12 조제 3 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p> <p>⑥ 제 1 항에 불구하고, 고객의 예치금을 회사가 관리하는 저축 또는 투자용 계정에 예치하여 해당 계정에서 이자 또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이용료 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 12 조(매매거래 등의 통지)~제 18 조(고객의 신고사항)<생략></p>	<p>제 12 조(매매거래 등의 통지)~제 18 조(고객의 신고사항)<생략><현행과 동일></p>	

<p>제 19 조(통지의 방법)</p> <p>① 회사는 고객이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p> <p>②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부재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락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p>	<p>제 19 조(통지의 방법)</p> <p>① 회사는 고객이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p> <p>②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락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p>	<p>공정거래위원회 시정요청 사항</p>
<p>제 20 조(약관의 변경 등)</p> <p>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p> <p>②~⑤(생략)</p>	<p>제 20 조(약관의 변경 등)</p> <p>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p> <p>②~⑤ (생략)(현행과 동일)</p>	<p>약관변경절차 조항 일부 수정</p>
<p>제 21 조(거래제한)~26 조(기타)(생략)</p>	<p>제 21 조(거래제한)~제 25 조(기타)(생략)(현행과동일)</p>	
<p>(신설)</p>	<p>부칙<개정 2016. 5. 17>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p>	